##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881 발의연월일: 2022. 3. 16.

발 의 자:이형석·조승래·이용빈

전용기 · 김두관 · 이탄희

안규백 · 신영대 · 주철현

문정복・박 정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4월 5일 시행되면 현행 보좌관·비서관·비서로 구성된 국회의원 보좌진 직책 명칭이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으로 변경될 예정임.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상 해당 직책 명칭이 변경되어 있지 않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등에 일부 혼선이 예상됨.

이에 「공직선거법」상 보좌관·비서관·비서의 명칭을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62조제5항 및 제135조제1항).

법률 제 호

다.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5항 중"秘書官・秘書"를 "선임비서관・비서관"으로 한다. 제135조제1항 단서 중"비서관・비서"를 "선임비서관・비서관"으로 한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62條(選擧事務關係者의 選任)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① ~ ④ (생 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第135條第1項 但書의 規定	5
에 의하여 手當을 지급받을 수	
없는 政黨의 有給事務職員, 國	
會議員과 그 補佐官·秘書官·秘	<u>선임비서관·</u>
書 또는 地方議會議員은 選擧	<u>비서관</u>
事務員이 된 경우에도 第2項의	
選擧事務員數에는 산입하지 아	
니한다.	<u>.</u>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① 선거사무	수당과 실비보상) ①
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	
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	
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	
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 <u>비서관·비서</u> 또는 지	<u>선임비서관·비서관</u>
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	

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	
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	
사무장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